

비건설 부문의 건설공사 실적 통합 공시 방안

2017. 1

최은정

■ 문제의 제기	4
■ 현황 및 문제점	5
■ 해외 사례	7
■ 개선 방안	13

-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제공됨에 따라 한 곳에서 원하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

 - 하나의 시설물인 '건설'과 관련된 '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실적 신고를 받고 있음(단,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그러나 각 협회에서 개별 기업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의 수요자인 발주자에게 업체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비해 영국의 Construction line에서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Construction line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건설업체들의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이며, 두 번째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건설업체의 DB 제공 기능임. 이 중 정보 제공의 기능은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Construction line에서는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체 공사 실적뿐만 아니라 세부 공종의 실적까지 공시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Construction line은 건설업체에게 기초 정보 이외에 부패 규정, 직원 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도 요구함으로써 발주자가 실적 이외에 건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에서는 개선 방안을 단기적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면서 원하는 업체에 한해 공사실적평가액만을 별도로 비건설 부문(전기, 정보통신, 소방)까지 합산해 병행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공사 실적 금액만을 비건설 부문까지 합산해 공시함으로써 전체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수요자는 개별 업체가 수행한 전체 공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통합법」을 전제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업종별로 구분 없이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비건설공사사업과 건설공사사업의 영역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건설 매출액 개념과 동일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현재 개별 공사업법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건설업종은 건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보의 수요자인 발주자와 공급자, 더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보의 통합 공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I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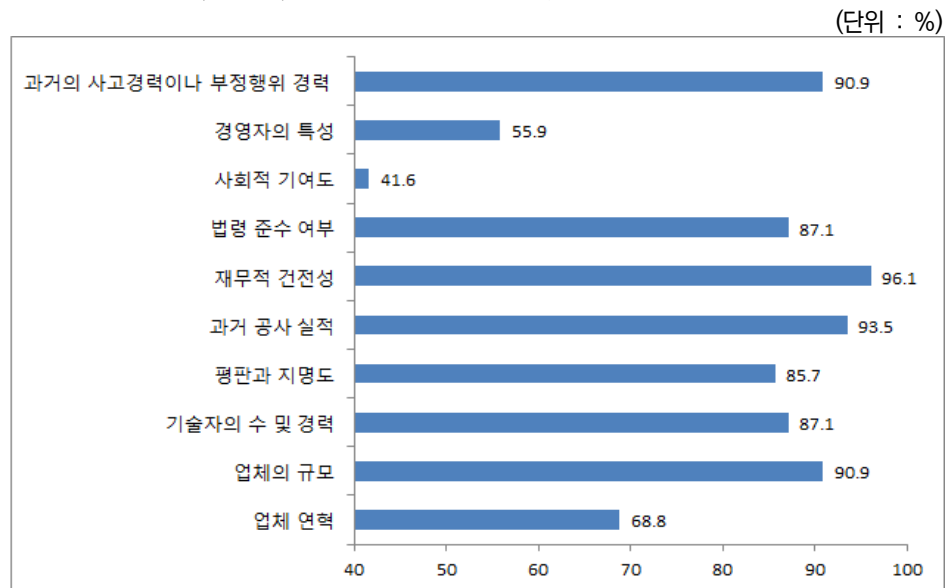
-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업종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제공됨에 따라 한 곳에서 원하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

- 현재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개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며, 그 외 업체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하나의 시설물인 ‘건설’과 관련된 ‘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발주자의 경우 공사에 맞는 최적의 건설업체를 고르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발주자가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개별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임.

〈그림 1〉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 시 고려하는 항목



- 설문 조사 결과¹⁾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업체 선정 시 ‘재무 건전성’, ‘과거 공사 실적’, ‘업체의 규모’, ‘과거의 사고 경력이나 부정행위 경력’을 가장 고려한다고 언급함. 이때, ‘과거 공사 실적’, ‘업체의 규모’ 등의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체가 수행한 전체 공사 실적(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

1) 본 내용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김민형 외, 2014) 보고서의 설문 조사 중 일부를 사용한 것임.

방시설공사 등을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할 것임.

-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의 일원화를 위해 개별 건설업체의 수행 실적, 재무상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건설업종 등록 실태 및 업종별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후 영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건설업종 등록의 분산 실태

(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 분류

-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업)」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정의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 「건산업」에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동법 제2조 제4항).

- 이와 같이 「건설법」에서 비건설 부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²⁾

2. 업종별 정보 제공 현황

-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실적 신고를 받고 있음(단,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 건설업체들의 실적 신고를 통해 협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당 업종에 대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함. 둘째, 개별 업체들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음.
 - 〈표 2〉에서와 같이 5개 업종의 협회에서는 개별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회원사에 한함)하고 있음.
 - 또한, 개별 업체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상호, 주소, 대표자명, 주소 등) 및 경영상태, 기타 통계 정보 등을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각 협회에서 개별 기업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의 수요자인 발주자에게 업체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함에 따라 개별 업체의 전체 건설공사 실적(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이 포함된 전체 공사 실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둘째, 발주자가 실적 이외에 건설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음 (건설업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만 수집이 가능함).
- 이와 같이 건설업종 등록의 다기화로 인해 건설업체는 업종별로 각각의 협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함. 이는 업무 중복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도 다소 상이하여 개별 업체에 대한 전체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최민수·나경연(2014), 시공 관련 건설업종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2〉 협회별 정보 제공 내용

협회	분야	분야별 세부 내용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총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업체 세부 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대표번호, 주소
	건설공사 실적	주요 공종별 실적, 기술자 수
	경영상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기타	우수건설업자, 신기술 지정 현황, ISO 인증 현황, 협력평가 우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업체 세부 정보	상호, 본사 주소, 대표 번호, 대표자명
	기타	기술자격등급별 인원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총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전년도 공사실적 총액, 지역 순위, 전국 순위
	업체 세부 정보	상호, 본사 주소, 대표 번호, 대표자명
	공사 업체 분포 현황	지역별/업종 형태별(전문, 겸업), 지역별/조직 형태별(개인, 법인)
	기타	등록 공시, 승계 공시, 취소·폐업 공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총액만 공시) 및 순위
	공사업 관련 통계	공사업 등록 현황, 기술자 등록 현황, 실적 신고 현황, 경영 분석(주요 경영지표 분석), 시장 현황(지역별, 발주기관별, 공사 규모별 실적 등 공시)
한국소방시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총액만 공시) 및 순위
	업체 세부 정보	회원사만 열람 가능(업체 기본 현황, 평가 진행 현황, 실적 현황, 경영상태 조회, 보유 기술자 현황, 평가액 조회, 수수료 납부 현황 등)
	공사 업체 통계	공사 지역별, 발주기관별 기성 실적 현황, 경영상태 평균 비율 및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기타	회원사, 신규 회원사 현황

주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한 항목으로 실제 회원사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Ⅲ 해외 사례

1. 영국의 건설업종 분류 현황

-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건설업종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단, 통계적 사용 목적 등을 위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음.³⁾

3) 권오현(2005), 건설업 업역구조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표 3>에서와 같이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외에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까지 건설공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

<표 3> 국제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41			건축(Construction of buildings)
	410	4100	건축(Construction of buildings)
42			토목(civil engineering)
	421	4210	도로 및 철도(Construction of roads and railways)
	422	4220	전기, 수도, 가스 시설사업(Construction of utility projects)
	429	4290	기타 토목사업(Construction of other civil engineering projects)
43			그 밖에 특화된 건설 관련 업종(Specialized construction activities)
	431		해체 및 단지 조성 사업(Demolition and site preparation)
		4311	해체(Demolition)
		4312	단지 조성 사업(site preparation)
	432		전기, 배관, 기타 건설 설치공사(Electrical, plumbing, and other construction installation activities)
		4321	전기 설치(Electrical installation)
		4322	배관, 열, 냉난방 설치공사(plumbing, heat and air-conditioning installation)
		4329	기타 설치공사(other construction installation)
	433	4330	빌딩 완성 및 마감(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439	4390	기타 건설 관련 사업(other specialized construction activities)

자료 : United Nations(2008),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ISIC), Rev.4.

-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건설업체의 업종별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영국은 경제혁신부(BIS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에서 Construction line을 관할하면서⁴⁾ 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Construction line에서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영국의 Construction line

(1) Construction line의 운영 체제

- 영국은 건설업 면허나 허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를 통하여

4) 최민수(2016), 해외 공공공사 입찰·계약 제도 조사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건설업체의 정보를 발주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대신 공통의 평가 DB(Data Base)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98년 영국의 Construction line이 탄생하게 되었음.

- Construction line은 공공·민간 발주자, 더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 제공을 목적으로 함.

❖ Construction line의 소유권은 영국 정부가 가지며 운영은 민관 파트너십의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음. 현재 운영은 Capita사가 맡고 있으며, Construction line의 입찰 운영권은 2년마다 입찰 과정을 거쳐 갱신되고 있음.

❖ Construction line은 정부에 의한 제도적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발주자와 건설업체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용되고 있음.

- 현재 Construction line에는 중앙 부처 및 산하 기관, 지방 정부, 민간 기업 등 8,000개 이상의 발주기관들이 등록을 하고 있음.

- 또한,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및 자재공급업체 등 2만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Construction line에 등록을 하고 있음. 발주자는 Construction line을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업은 어떤 발주기관이 자신의 회사 정보를 검색했는지 파악할 수 있음.⁵⁾

(2) Construction line의 기능

❖ Construction line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과 둘째, 일정한 자격을 가진 건설업체의 DB 제공 기능임. 이중 정보 제공의 기능은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Construction line은 단순히 공사수행 능력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공사 실적 및 재무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검색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onstruction line은 PAS 91⁶⁾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사전 자격 질문(standard

5) 최민수(2016), 해외 공공공사 입찰·계약 제도 조사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 PAS 91은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사전 자격 요건 질문을 개발해 표준화시킨 것임.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을 만들어 건설업체의 정보를 수집, 평가, 모니터링. 이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비용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음. 또한, 발주자가 언제든지 중소 건설업체를 포함해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1)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Construction line에서는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해당 업체가 수행한 세부 공종의 실적을 모두 공시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그림 2〉 Construction line 평가 인증서 샘플

Constructionline
A UK GOVERNMENT CERTIFICATION SERVICE

**Supplier Qualification Certificate
Notation Schedule**

E R Hemmings (Building) Ltd

The above firm has been approved fo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work to the maximum contract/commission value indicated for each category:

Group Work Category	Notation
GENERAL	
Work Category	
BUILDING GENERAL	£4,796,800
BUILDING REFURBISHMENT OVER 15K	£3,746,800
CIVIL ENGINEERING	£527,200

Registration Number: 770
Date of issue: 28 September 2012 Date of expiry: September 2013
The information on this schedule is correct on the date of issue. Up to date information can be obtained by calling Constructionline on 0844 892 0313

자료 : 김민형 외(2014),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이때, 건설업체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의 실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인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발주자는 관심이 있는 개별 업체에 대해 여러 곳에서 따로따로 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설법」상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를 비건설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해당 업체가 수행한 모든 건설공사의 실적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또한, Construction line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발주자에게 공신력을 가짐.

2) 건설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제공

■ Construction line에 등록을 원하는 건설업체는 필수 항목(compulsory information) 12가지와 선택 항목(non-compulsory information) 2가지를 제출해야 함(〈표 4〉 참조).

- 필수 항목으로는 기업 정보, 기업 대표자 정보, 부정부패 등에 관한 처벌 규정, 기업 재무상태, 보험, 자격증, 직원 정보, 영업 분야 등이 있음.
- 선택 항목으로는 품질 및 BIM 인증, 사업자 단체 및 전문가 집단 가입 상황이 있음.

■ Construction line은 건설업체에게 기초 정보 이외에 부패 규정, 직원 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도 요구함으로써 발주자가 실적 이외에 건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표 4〉 Construction line의 등록 정보

정보 제출 내용		항목
필수 정보	1. 기업 정보(contact details and company information)	필수 항목
	2. 기업 대표자 및 지주회사 대표자의 정보(director and partner information)	
	3. 부정부패 등 발생 시 처벌 규정(business and professional standing)	
	4. 기업 재무상태(financial information)	
	5. 보험(insurances)	
	6. 자격증 및 인증(licenses and accreditations)	
	7. 직원 정보(staffing)	
	8. 등록하기 원하는 공종(categories and references)	
	9. 영업 분야(area of operation)	
	10. 보건 및 안전(health and safety)	
	11. 고용의 평등 및 다양성(equality and diversity)	
	12. 환경(environmental)	
선택 정보	1. 품질 및 BIM 인증(quality and BIM)	선택 항목
	2. 사업자 단체 및 전문가 집단 가입 상황(trade association/ professional body membership)	

자료 : Construction Line, 'Summary of Certification Criteria for Suppliers'.

(3) Construction line의 시설물 분류 기준

■ Construction line의 세분화된 시설물 분류는 발주자가 필요한 시공 분야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Construction line에서는 건축 마감, 건축 일반, 토목, 전기, 사회 기반시설, 기계, 기타 서비스의 7가지 대분류로 시설물을 분류하고 있음. 이러한 7가지 대분류는 다시 57개 중분류로 나누어지며, 57개 중분류는 다시 약 800개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짐.
- 발주자는 세분화된 시설물 분류로 인해 공사 발주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음. 이는 발주자가 세부 영역별로 건설업체 간 비교 우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표 5〉 Construction line의 건설업체 업무 분류 정보

대분류	중분류	
건축 마감 (Building finishes)	Conservation	Glazing
	Doors	Insulation
	External Walls	Internal Walls / Ceilings
	Flooring	Roofing
	General	Waste Disposal
건축 일반 (Building General)	Building Type	Sector
	General	
토목 (Civil Engineering)	Airfield Services	Marine/River
	Drainage/Pipework	Piling / Groundworks
	General	Roads & Bridges
	Landscaping/Sports	Site Investigation
전기(Electrical)	Aerials	General
	Car Park Services And Equipment	Power Supply
	Comms	Security
	Control Systems	Testing
	External Lighting	Transportation
	Fire Alarms	
사회 기반시설 (Infrastructure)	General	Power Supply
	Infrastructure	
기계 (Mechanical)	Boilers	Heating And Ventilation
	Building Service Equipment	Lifts / Access
	Car Park Services And Equipment	Mechanical Handling
	Cranage	Mechanical Process
	Fire Protection	Pipework
	General	Potable Water And Waste Treatment
	Heating	Tanks & Associated Services
기타 서비스 (Other Services)	Cleaning	Others
	Equipment Hire	Security
	General Maintenance	Waste / Water
	Land Surveys	Waste Disposal

주 : 1) Contractor work category descriptions.

2) 본 표는 중분류까지 표시한 것이며, 하위의 세부 항목이 약 800개 정도로 나누어짐.

- 이때, Construction line은 건설업체의 업무를 분류하는 데 있어 소방, 전기 분야를 포함해 발주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종합해 보면,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Construction line이라는 한 기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업종별로 건설업체에 대한 자료가 공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IV 개선 방안

1. 개선 방안의 원칙

- 개선 방안의 목적은 하나의 시설물인 '건설'과 관련된 '공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발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보의 통합성 제고임. 현재 업종별로 공시되고 있는 실적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정보의 전문성 제고임. 이를 위해 현재 수집되고 있는 공종을 구체화시켜 발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정보의 다양성 제고임. 현재 평가를 위하여 수집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 개선 방안

(1) 비건설 부문의 실적 합산

- 현재 「건설법」상 비건설 부문으로 분류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시공 능력평가액의 통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 방안을 단기적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1) 단기적 개선 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면서 원하는 업체에 한해 공사실적평가액만을 별도로 비건설 부문(전기, 정보통신, 소방)까지 합산해 병행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은 각 협회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대한 전체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종간 경직된 구조로 인해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법상 규제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공사실적평가액만이라도 비건설 부문(전기, 정보통신, 소방)을 통합해 병행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영국 Construction line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즉, 전체 합산 실적과 업종별 실적을 병행해 공시함으로써 발주자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실적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때, 단기적 대안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먼저, 건설공사 실적 금액만을 비건설 부문까지 합산해 공시함으로써 전체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수요자는 개별 업체가 수행한 전체 공사 실적액만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또한, 단기적으로는 공사 실적에 대한 부분만 합산을 하기 때문에 비건설 부문까지 포함된 시공능력평가액을 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등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시공능력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업종별로 다소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개별법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어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함. 이때,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 실적 데이터를 협조 요청해 자료를 취합할 수 있으나 단순 합산으로 공시할 때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종합해 보면, 현재는 각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업종별로 개별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의 전체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초래됨. 시공능력평가가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비건설 부문(전기, 정보통신, 소방)의 공사 실적까지 포함된 공사실적평가액의 병행 공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의 업체 현황 조서에서도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종류 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어내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개별 건설업체를 평가할 때 수행한 전체 공사의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건설업체가 실적 신고 시 활용하는 기존의 서식에 비건설 부문으로 분류되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실적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단, 현재 개별법에 의해 업종들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실적을 통합적으로 기재해야 함.

2) 장기적 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통합법」을 전제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업종별로 구분 없이 통합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그동안 「건산법」 이외 국내·외 규정에서는 건설업을 단일법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건산법」에서 비건설 부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해 그동안 건설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살펴보면, 건설산업 분류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산업 분류 안에 42204 소방시설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1 전기공사업, 42311 일반전기공사업, 42312 내부전기배선공사업, 4232 통신공사업, 42321 일반통신공사업, 42322 내부통신배선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모두 건설공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음.**
 - 일본의 건설업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없이 28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일반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 외 나머지 업종은 전문건설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안에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도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의 범위 안에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음.**
-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나 일본의 건설업종 분류 체계, 영국의 건설업 분류와 같이 건설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행 「건설법」에서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비건설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건설공사에 대해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어려움.**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건설공사업과 건설공사업의 영역을 통합해 건설공사의 실적을 건설 매출액 개념과 동일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적 신고 시 업체로부터 업종별 준공 실적을 받아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이때, 장기적 대안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먼저, 「건설산업통합법」을 전제로 건설 매출액 개념과 동일하게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주자는 건설업체의 전체 시공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
 - 반면, 법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산업통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

7) 최민수·나경연(2014), 시공 관련 건설업종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불가능함.

- 또한, 현재 업종별로 시공능력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산식이 상이(각 평가 항목을 계산하는 방식도 업종마다 다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통합된 시공능력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산식의 개발이 필요함.

〈표 6〉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이상의 각 대안별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7〉과 같음.

〈표 7〉 대안의 장·단점 비교

구분	대안	장점	단점
단기	현행대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면서 공사실적평가액만을 별도로 비건설 부문(전기, 정보통신, 소방)까지 합산해 병행 공시	-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을 제외한 실적만을 공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 가능 - 정보 수요자가 개별 업체에 대해 원하는 업종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음.	- 각 기관에 공시 항목 협조 요청 시 실적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으나 단순 합산으로 공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고려 필요 - 원하는 업체만 자율적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전체 업체들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음. -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장기	「건설산업통합법」을 전제로 업종별 구분 없이 시공능력평가액의 통합 공시	- 통합법을 기반으로 건설 매출액 개념과 동일하게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할 수 있음.	- 「건설산업통합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 - 통합된 시공능력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산식 개발 필요

(2) 발주자의 니즈에 부합한 정보 제공 필요

■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체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건설업체에 대하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발주자가 원하는 정보 수준에 다소 미흡한 상태임.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심사 세부 기준으로 실적 외에 고용, 건설 안전, 공정

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항목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건설업 경영사항 심사기준에서도 평가 업체의 노동 복지 상황, 방재 활동 대한 공헌 상황, 법령 준수 상황 등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건설업체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업체 기본 내역(주소, 대표자명 등), 경영상태 및 기타 사항(신기술 지정 현황, ISO 인증 현황, 협력평가 우수 등) 등에 그치고 있음.

■ 한편, 최근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를 살펴보면 평가 절차상에서 공종의 세분화를 통해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외에 주요 공종별 실적의 공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상태임.

-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심사 분야 중 하나인 공사수행 능력에서 동일 공종 전문성의 비중을 세부 평가 항목으로 넣어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 Construction line은 업체가 등록 시 필수 사항으로 재무상태 외에 부정부패 등 발생 시의 처벌 규정, 직원 정보, 자격증, 영업 분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Construction line은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세부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즉,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7개 대분류를 다시 57개 중분류로 나눈 후 이에 대해 다시 약 830개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 종합해 보면, 현재 건설업체에 대해 각 협회마다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일원화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 현재 개별 공사업법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건설업종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건설업체와 관련된 정보가 분산되어 제공됨에 따라 개별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 정보의 수요자인 발주자와 공급자, 더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보의 통합 공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